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어 촌 · 어 항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어촌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선정한 선도 사업지 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어촌·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‘건축공간연구원’ 추가(안 제42조의6)
- 나. 어촌·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‘어촌특화지원센터’를 추가(안 제42조의8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대통령령 제 호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건축공간연구원

제42조의8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의6(어촌·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)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	제42조의6(어촌·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	2. ----- ----- -----
가·나. (생 략)	가·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다. 건축공간연구원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의8(어촌·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)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·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	제42조의8(어촌·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</u>

	<u>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어촌특 화지원센터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	
연 락 처	(044) 200 - 6171